

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07 - 제46호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
제출연월일 2007. 6. 7.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령 낫표표시 및 읍·면·동 청소년지도위원수의 상향 조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변경함(안 제명)
 -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
⇒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
- 나. 읍·면·동 청소년지도위원수 조정(안 제4조)
 - 10인 이내 ⇒ 30인 이내
- 다. 읍·면·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명칭 변경(안 제9조)
 - 청소년지도협의회 ⇒ 청소년지도위원회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
- 라. 기 타
 - 1 입법예고(2007. 5. 1 ~5. 21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

제1조중 “청소년기본법 제22조” 를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27조” 로 하고,
“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” 를 삭제한다.

제2조중 “지도위원” 을 “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” 으
로 하고, “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삭제한다.

제3조중 “시장” 을 “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한다.

제4조중 “10인” 을 “30인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중 “청소년지도위원” 을 “지도위원” 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청소년지도위원회 등)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
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에는
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, 읍·면·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시장은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및 읍·면·동청소년지도위원회의
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, 여비, 교육기회의 제공, 표창 등 필요한
지원을 할 수 있다.

별표중 “청소년기본법 제22조” 를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27조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명 : <u>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청소년기본법 제22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 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의 자격·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 <p>제2조(지도위원의 자격) ①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<u>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</u> 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이어야 한다.</p> <p>제3조(위촉절차) 지도위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, 사회복지단체의 장, 당해 읍·면·동장,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<u>시장</u>이 위촉한다.</p> <p>제4조(지도위원의 수) 지도위원의 수는 읍·면·동별로 <u>10인</u> 이내로 하되, 당해 읍·면·동의 자연환경, 인구, 학교위치,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명 : <u>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--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제27조 ----- ----- <삭 제> ----- -----</p> <p>제2조(지도위원의 자격) ①<u>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</u>-- <삭 제>----- ----- -----</p> <p>제3조(위촉절차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사천시장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</u>-----</p> <p>제4조(지도위원의 수) ----- -----<u>30인</u>----- ----- -----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제5조(지도위원의 임무) ①(생략)</p> <p>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,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, <u>청소년지도위원</u>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5조(지도위원의 임무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 <u>지도위원</u>----- -----</p> |
| <p>제9조(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)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있게 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 및 시 단위로 <u>청소년지도협의회</u>를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<u>청소년지도협의회</u>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, 여비, 교육기회의 제공,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| <p>제9조 (청소년지도위원회 등) ①----- ----- ----- <u>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</u>를, 읍·면·동에는 <u>청소년지도위원회</u>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---<u>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</u> 및 <u>읍·면·동 청소년지도위원회</u>----- ----- ---</p> |

[별표]

청소년지도위원증의규격·제식및기재사항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(앞면)생략 (단위: cm)생략 (뒷면)</p> <div data-bbox="263 645 635 963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<p>성 명 : _____ 주민등록번호 : _____ 주 소 : _____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 22조 규 정 에 의 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⑥ (인)</p></div> <p>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 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| <p>(앞면)현행과 같음 (단위: cm)현행과 같음 (뒷면)</p> <div data-bbox="901 638 1289 958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<p>성 명 : _____ 주민등록번호 : _____ 주 소 : _____ ----- 청소년기본법 제27조 ----- ----- 년 월 일 ⑥ (인)</p></div> <p>----- ----- -----</p> |

관계법령 발취

【청소년기본법】

제27조 (청소년지도위원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·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